

##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
| 1. 제목         |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위반사실의 공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2. 공표 대상자     |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대표자의 성명 |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3. 공표 내용      | 위반 행위, 처분 내용, 해당 기관의 명칭·주소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<br>* 법인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4. 법적 근거      |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·제50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5. 공표원인이 된 사실 | ○ 명단 공표 기준일(    년    월    일)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,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|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수급액 | 위반 행위   | 처분일 | 처분권자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6. 공표 예정일     |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7. 공표 방법      | 관보<br>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<br>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8. 공표 기간      |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| 9. 소명 기간      |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부터   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|

귀하(귀 기관)께서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명 기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표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.

기술교육대학 직인